

##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.



**Q**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?

**A**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경우,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
1. 만 65세 이상인 경우
2. '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경우

**Q**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?

**A**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,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.

**Q**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?

**A**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.

**Q**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?

**A**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.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

다름의 동행,  
더 아름다운 세상을  
만들어요



###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

보건복지부-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  
 보건복지상담센터 : 국번 없이 **129**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**129**  
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: [www.mohw.go.kr](http://www.mohw.go.kr)

국민연금공단-장애정도 심사제도 안내  
 (장애정도 판정 관련 민원상담)  
 국민연금콜센터 : 국번 없이 **1355**

읍·면·동 주민센터 - 신청 관련 문의  
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- 대상자 결정 및 통지

##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

국민연금공단  
보다 나은 보건복지부

'20.1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

**월 최대**  
**30만원**으로  
**인상됩니다!**



장애인연금 · 장애(아동)수당 ·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


장애인이 행복한 나라,  
따뜻한 대한민국